한국작물보호협회

㈜0674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대양빌딩 5층(☎:02-3474-1590~4)/FAX:02-3472-4134/기술시험부

문서번호 기술시험-29

시행일자 2025. 3. 20

수 신 농촌진흥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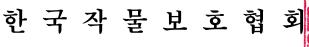
참 조 농자재산업과장

제 목 농촌진흥청 「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」등 4종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의견 제출

1.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-67호(2025.2.28.), 제2025-68호 (2025.2.28.), 제2025-69호(2025.2.28.), 제2025-70호(2025.2.28.) 와 관련됩니다.

2. 관련호에 의거 농촌진흥청 고시 「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」 등 4종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 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「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」 등 4종 일부개정고사(안) 행정예고 의견 1부 끝.





○ 공고 제2025-67호 「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」일부개정 고시(안) 검토의견

1) 제6조(대조약제 지정) : 일반등록 무대조시험 근거마련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제6조(대조약제 지정)	제6조(대조약제 지정)	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조약제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
1. ~ 4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현행과 같음)	
	3. <u>별표 15 대조약제 및 등록약제 중 사용방법(처리시기 및 처리방법)과 동</u> 일한 약제가 없는 경우	○ 일반등록 무대조 시험 추가 건의 *기존에 해당 작물 및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이 없거나, 별표15 대조약제 또는 등록된 약 제가 시험하고자 하는 약제와 처리시기 및 처리방법 상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시험약제 효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한 대조약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
	4. (현행 3과 같음) 5. (현행 4와 같음)	
5. 영 제8조제1항 따른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	6. (개정안 5와 같음)	

2) 추가 고시개정 건의 : 접종시험 근거마련

현 행	개 선 안	비고
변 행 [별표 10]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10-1. 살균・살충제 10-1-1. 포장약효시험 10-1-1-1. ~ 10-1-1-2. <생략> 10-1-1-3. 시험포장의 선정 10-1-1-3-1 ~ 10-1-1-3-4.<생략> 10-1-1-3-5. 시험포장은 시험결과의 신뢰 성 제고를 위하여 무처리구의 최소 병 해충 발병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 다.<신설 2016.12.22.>	개 선 안 10-1-1-3-5	비고 O 시험포장의 조건이 환경에 따라 발생양상이 다양함 *시험기관에서 해당 병해충이 자연 발생하는 포장 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, 발생밀도 등이 균일한 포장을 조성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접종없이 시험이 불가한 병해충 및 발생밀도가 낮은 병해충의 경우 접종가능여부를 명확히 함
		* 살충제 분야만 접종관련 고시 있음